

인천광역시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·고시

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·고시합니다.

2013. 10. 4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(인)

1. 고 시 명 : 인천광역시서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·고시
 2. 대 상 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산6-2번지
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58번지
 3. 지정사유 : 집중호우시 계류범람으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 우려 지역
 4. 고시일자 : 2013. 10. 4
 5.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(산림보호법 제45조의10)
 - 가.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 - 나.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 - 다.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 6. 열람 및 문의사항
 -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서구청 녹지경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-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녹지경관과(032-560-47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1부.
2. 지정 예정지 지형도 1부. 끝.